

제 목	국 문	의료보호 사업의 대상자 특성별 급여 개발에 관한 연구		
	영 문	Improving Benefit Packages of Medical Care Assistance Program in Accordance with Beneficiaries' Characteristics		
저 자 및 소 속	국 문	문옥륜, 최병순, 이기효, 장동민, 심중보, 이은표, 한동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영 문	Ok Ryun Moon, Byung Soon Choi, Gi hyo Lee, Dong MIn Chang, Dong Woon Han <i>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i>		
분 야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비	발 표 자	문 옥 린 (일반회원)	
발표 형식	구 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의료보호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1종 대상자 특히 거택보호자와 시설보호자의 경우 단독가구가 많고 부양율이 낮아서 질병에 이환시 돌보아줄 사람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둘째,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대상자보다 경제활동인구 연령층이 적고 청소년층과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많다. 또한 여자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은데 특히 노년층에서 그러하다.

셋째, 의료보호대상자는 6대 도시보다 기타 시.도에 많고 해당지역의 인구대비로 살펴보아도 6대 도시보다 기타 시.도에 많은데 시설보호자의 경우는 그 반대이다.

넷째, 의료보호대상자는 의료보험대상자보다 입원 진료에서는 정신장애와 손상 및 중독에 해당하는 질환이 월등히 많고 임신과 관련된 질병은 훨씬 적다. 외래 진료에서는 근골격계 진단과 손상 및 중독에 해당하는 질환이 많아서 만성퇴행성 질병 보유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의료보호급여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의료보호 지정의료기관으로의 선정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만큼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

둘째, 의료보호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만성질병구조에 비추어 볼 때 30일 또는 90일로 입원급여 기간의 제한을 둔 것은 이들의 의료요구 충족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셋째, 의료부조대상자의 경제수준에 비하여 일부본인부담율이 적절치 못하다.

넷째, 의료보호대상자의 제 특성상 생활에 반드시 필요로 되는 보조기, 안경, 의 치, 보청기 등이 필수품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즉 의료보호대상자의 필수요구에 의료보호의 급여 범위가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의료기관에서 직.간접적으로 차별진료의 병폐가 있다. 여섯째, 저소득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의료보험 이들에게만 실시되지 않고 있다.

의료보호급여를 개선하여 합리화 한다는 것은 제반 현실적 한계위에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요구에 최대한 부응하는 것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의료보호급여의 합리화란 의료보호대상자의 만족수준을 최대한 높여 줄 수 있는 급여수준 및 급여묶음(benefit package)을 설정하되, 제반 제약조건을 전제해야 하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의료보호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적인 활용을 보장하는 것이라야 된다. 이러한 기본 인식하에서 의료보호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질병구조적 특성, 의료이용 양상의 검토 및 현행 의료보호급여 문제점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급여수준의 향상과 대응수단의 개발 및 재정의 효율화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료보호급여의 합리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현행 의료보호급여의 개선이 가장 손쉬운 접근방법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 첫째, 현물급여에 건강진단 등 예방급여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다.
- 둘째, 요양비와 장체비의 신설이 필요하다.
- 셋째, 의료기관별 가산을 적용에 차등을 철폐해야 한다.
- 넷째,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장하고 의료보험전달체계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섯째, 의료보호대상자들에게도 약국의료보험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 여섯째, 의료보호제도의 본인부담율을 전반적으로 인하·재 조정해야 한다.
- 일곱째,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한 대불제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그 다음 의료보호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급여의 개발로서는 필수 의료보장구의 지급, 재택요양 서비스의 개발, 그리고 상병수당의 지급 등을 검토, 도입하여야 한다. 또한, 특성별 대응수단의 개발전략으로는 주로 만성병에 대한 별도 고려가 필요하다.

첫째, 정신질환자 진료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인의료서비스의 제공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정간호급여, 간호양로원(nursing home)등 중간치료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재정 효율화 방안으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으로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진료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의료 수요자에게는 보건 교육과 홍보를, 그리고 의료공급자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DRG 등의 포괄수가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재정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비율을 지역실정과 주민의 부담능력에 맞추어 재 조정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합리적인 재정부담 공식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보호 진료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료보험에서 처럼 진료비 예탁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